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회)	

국유재산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토균형발전 및 철도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주식회사 에스알의 운행노선 확대와 신조 고속철도 차량을 추가 도입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주식회사 에스알에 대한 자본금을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해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에 주식회사 에스알을 포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에 주식회사 에스알 포함

(안 별표1 제31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주식회사 에스알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제2조 관련) 1.~30. (생략) <신설>	[별표1]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제2조 관련) 1.~30. (현행과 같음) <u>31. 주식회사 에스알</u>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44) 215 - 5172